

[] 폐기물부담금

[] 재활용부과금

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14일	
청구인	상호		전화번호		법인등록번호
	주소	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	대표자(개인사업자) 생년월일	
사유	[] 출고 내용 변경 [] 수출 []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				
품목					
반환청구금액			반환금 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		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
 위와 같이 폐기물부담금[] 재활용부과금[]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 귀하

첨부서류	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 다만, 한국환경공단이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. 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출고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.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